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
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찬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71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8월 26일

발 의 자: 고찬양, 김순옥, 김민석, 전철규,
김성한, 강선영, 이종숙, 정정희,
박학용, 한상욱, 홍재희, 정재봉,
최세진, 조기만, 김현진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강서구 의회의 조례 중 개정해야 할 사항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1조 중 “제42조”를 “제51조”로 한다.

나. 제2조제3호 중 “법 113조부터 제116조까지”를 “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”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“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제51조

나. 입법예고 : 2022. 8. 31. ~ 9. 5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
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97호를 삭제한다.

제1조 중 “제42조”를 “제5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”를 “법 제126조부터 제129조
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”를 “법
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</p> 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</u>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</u>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(신설 1995.12.8, 개정 2008.1.9., 2013.3.20)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51조</u> -----</p> <p>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